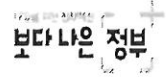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관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42호, 2019.6.12. 공포)
2.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5945호, '18.12.1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위탁 및 방법, 이물보고의 절차,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42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
협동조합이사장,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대한의공
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주무관 정재용 사무관 고대웅 의료기기정책 전결 2019. 6. 12.
과장 정진이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5131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리기기정책과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762 팩스번호 043-719-3750 / optjy@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